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89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894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2803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박소연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5. 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2803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2. 1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89,478,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89,478,16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채무자 B(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의 시동생이었던 자이다.1)

나.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채무자와 피고의 법률행위

1) 채무자는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 내지 3, 5번 각 부동산과 양주시 K 답 11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채무자는 2021. 1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채무자는 2021.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피고는 2022.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피담보채무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이하 'J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나아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2) 무자력 상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2) 가)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805,320,000원

나) 소극재산

○ 이 사건 채무: 89,478,16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0원

○ 피고에 대한 채무: 538,445,528원3) ○ 소극재산의 합계: 1,227,923,688원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채무자에게 538,445,528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요구하였는데, 부동산중개보조원인 L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재산 가치가 2억 5백만 원이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J조합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평가가액은 805,32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은 실제 부동산 담보가액인 205,320,000원⁴⁾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89,478,160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액인 89,478,16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9,478,16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명재권, 판사 이민수

별지

1) 채무자는 피고의 형인 E과 1984. 2. 15. 혼인하였다가, 2019. 7. 8. 이혼하였다.

2) 피고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3) 원고의 2023. 12. 19.자 준비서면 참조